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39
- 나. 제안자: 강명숙 의원 외 11명
- 다. 제안일자: 2021년 11월 19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11월 22일(월)

### 2. 제출사유

코로나 19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 지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안 제8조의2)
- 다.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11. 19.~ 11. 24.(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조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2021년 11월 19일 강명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11월 22일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개정안을 살펴 보면, 안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관련법 개정에서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1호 역시 같은 이유로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국민행동지침이나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임.
- 그리고, 기존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 설립을 장려하기 위함임. 나아가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변경된 인용 법령을 시의적절하게 정비하고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재난으로 인한 폐업시 지원의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또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동의 이익추구로 이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